

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 (제23조제1항 관련)					처리기간	
					시·군·구 3일	
신청인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-		
	③ 주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동 번지				
④ 어업의 종류			⑤ 양식방법			
⑥ 면허번호			⑦ 포획·채취물, 양식물			
⑧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						ha
어업권을 분할받을 자	⑨ 성명		⑩ 주민등록번호	-		⑪ 어장면적
	⑫ 주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동 번지				
	⑬ 성명		⑭ 주민등록번호			⑮ 어장면적
	⑯ 주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동 번지				
	⑰ 성명		⑱ 주민등록번호			⑲ 어장면적
	⑳ 주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동 번지				
㉑ 분할사유						
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분할하고자 신청합니다.						
신청인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			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
구비서류 1.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.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						수수료
						1,000원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

뒷면

